

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최민규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770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5년 05월 26일

발 의 자: 최민규 의원(1명)

찬 성 자: 강석주, 고광민, 김규남,
김동욱, 김영철, 김용호,
김원중, 김재진, 김지향,
김태수, 김혜영, 남궁역,
남창진, 문성호, 윤종복,
이봉준, 이상욱, 이숙자,
이원형, 이은림, 이종태,
임춘대, 정준호, 허 훈,
홍국표, 황철규 의원(26
명)

1. 제안이유

-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충전 중 발생하는 화재 위험이 사회적
으로 주목되고 있으며, 특히 지하주차장 등 밀폐된 공간에 설치된 전
용주차구역은 화재 발생 시 열기와 연기의 수평 확산으로 인해 대피
및 초기 소방 대응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.
- 기존 조례는 화재 확산을 줄이기 위한 전용주차구역의 물리적 환경
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점검 항목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, 안전 확보를
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실정임.
- 이에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위치, 차량 및 가연성 물질, 피난시설과의
공간 확보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, 필요한 경우 개선을 권고할
수 있도록 하여 화재 예방과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하여 설치 위치, 차량 및 가연성 물질, 피난시설과의 공간 확보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,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(안 제4조의2 신설).

3. 참고사항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첨부

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 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
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2(화재 예방 점검) ① 시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
예방 및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다음 각 호
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.

1.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설치 위치의 적
정성
2.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내 차량 및 가연성 물질 간 화재 확산 방
지를 위한 공간 확보 여부
3.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과 피난시설(직통계단, 비상구 등) 사이의
소방활동 및 대피를 위한 공간 확보 여부
4. 그 밖에 시장이 화재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
하는 사항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화재 예방을
위한 개선 사항을 권고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안내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4조의2(화재 예방 점검) ① 시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.</u> <u>1.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설치 위치의 적정성</u> <u>2.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내 차량 및 가연성 물질 간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공간 확보 여부</u> <u>3.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과 피난시설(직통계단, 비상구 등) 사이의 소방활동 및 대피를 위한 공간 확보 여부</u> <u>4. 그 밖에 시장이 화재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u> <u>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화재 예방을 위한 개선 사항을 권고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안내할</u>

수 있다.

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 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 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조의2(화재 예방 점검)를 신설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은 필요할 경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사항들의 적정성 점검 및 점검결과에 따른 개선사항 권고, 필요조치 등을 안내할 수 있다는 내용이므로 서울시의 재정 수입 순감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
담 당 관 주병준

추계세제팀장 김중헌

추 계 분 석 관 김지혜

☎ 02-2180-7952

e-mail : kjh0123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